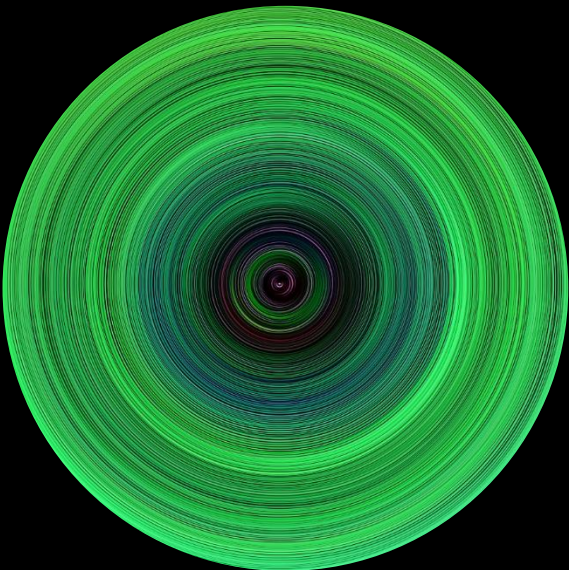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내용 :

개인소득세 (PIT)

1. 불법적 해고에 대한 보상금은 PIT가 부과됨;

법인 소득세 ("CIT")

1. 대표사무소의 은행 예금이자에 대한 CIT와 관련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9월22일 제85106/CT-TTHT호 OL;
2. 종속회계단위에 대한 CIT와 관련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9월23일 제85416/CT-TTHT호 OL;

부가가치세 ("VAT")

1.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SD 전자 데이터 파일 형태로 그래픽을 그려서 해외로 전자 수단으로 이전하는 서비스는 수출 서비스로 간주되며 VAT 0% 세율이 부과됨;

외국인 계약자세 ("FCWT")

1. 외국인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수입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FCWT;
2. 외국 은행에서 입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1. 제111/2020/ND-CP호 시행령의 수행에 초과 납세액의 처리에 대한 지침;
2.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처리.

01

조관세리

02

개인소득세

03

법인소득세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 관리



종합 정보

첫 9개월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첫9개월의 세금 징수현황:

- Covid-19의 영향으로 첫9개월의 총 징수액은 VND 803,105 Billion만 달성했으며 2020년 계획대비 66.4% 및 2019년 동기 대비 93%에 해당한다.

세무 감사/조사 현황 :

2020년 첫9개월동안 모든급의 조세당국은 48,975 케이스의 감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조세당국 사무실에서 436,112 부의 세금 신고서류들을 검토해 왔다. 세무 감사/조사를 통해 예상 부과세액은 VND 39,648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14.19%에 해당한다. 그중에 :

- 세금 징수액 증가: VND 13,267 Billion를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38.32%에 해당함;
- 국가예산에 납부된 총 징수액: VND 6,664 Billion를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04.8%에 해당함;
- 환급세액: VND 95,749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20년 계획 대비 73.7% 및 2019 동기대비 99.4%에 해당.



개인소득세



지침 문서

회사와 지사 간의 개인소득세 ("PIT") 신고 책임을 잘 못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함

2020년9월29일 세무총국 ("GDT") 은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침 제4076/TCT-DNNCN호 OL을 공표했다.

따라서 회사가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PIT 징수, 신고, 납부, 확정신고에 대한 책임은 지사가 아니라 회사가 지어야 한다. 지사가 PIT를 공제, 신고, 납부했을 경우에 양측은 제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10조 5항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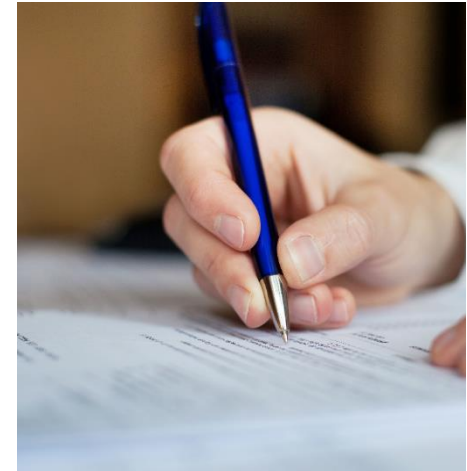
제38/2019/QH14호 조세관리 법령에 따라 초과 납세액의 처리에 대한 신규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음

GDT의 2020년10월5일 제4182/TCT-KK호 OL에 따라 재무부는 제156/2013/TT-BTC호 시행규칙에 의해 초과납부 세액, 연체이자, 벌금 처리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대체할 법적 문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초과납부 세액, 연체이자, 벌금 처리에 대한 절차가 제156/2013/TT-BTC호 시행규칙 제3조 2항 및 1항의 지침에 따라 계속 수행한다.

불법적 해고에 대한 보상금은 PIT가 부과됨

2020년2월07일 Dong Nai 세무국은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하므로 인한 보상금에 대한 PIT 정책을 안내하는 제835/CT-TTHT호OL을 공표했다.

따라서 회사가 불법적 해고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PIT면제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직원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지침 문서

대표사무소의 은행 예금이자에
대한 CIT와 관련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9월22일
제85106/CT-TTHT호 OL

2020년09월22일 하노이
세무국은 대표사무소의 은행
예금이자에 대한 CIT 확정과
관련 제85106/CT-TTHT호 OL를
공표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지만 사업활동에
해당한 비용과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CIT 5%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속회계단위에 대한 CIT와
관련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9월23일 제85416/CT-
TTHT호 OL

2020년09월23일 하노이
세무국은 종속회계단위에 대한
CIT 확정과 관련 제85416/CT-
TTHT호 OL를 공표했다.

따라서 공장이 본사가
소재하는 지방과 다른 지방에
소재하고 회사의
종속회계단위인 경우 공장이
소재하는 지방에 납부해야 할
CIT는 회사가 당기에 납부해야
한 CIT세액으로 회사의 총
비용중 종속회계단위에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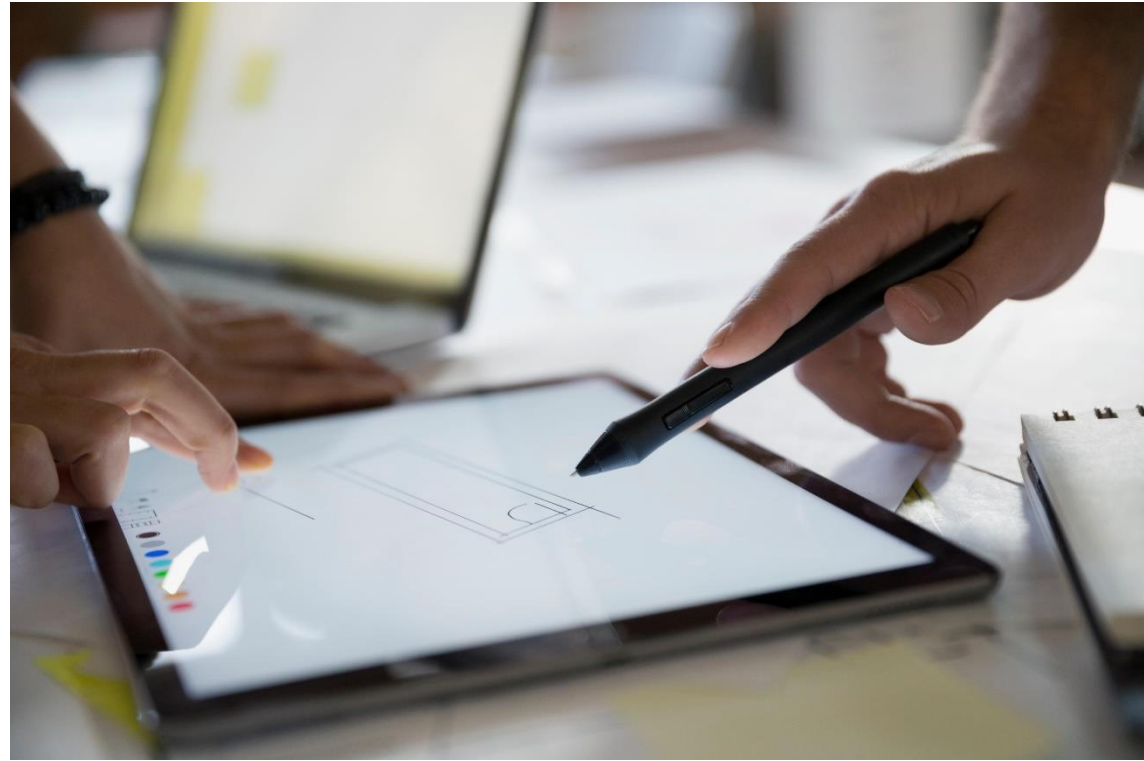
지침 문서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SD 전자 데이터 파일 형태로 그래픽을 그려서 전자수단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서비스는 수출 서비스로 간주되며 VAT 0% 세율이 부과됨

베트남 회사가 해외고객에 의해 제공된 연필 스케치를 바탕으로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SD 전자 데이터 파일 형태로 그래픽을 그려서 전자수단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 수출 서비스로 간주되며 상품이 베트남 영토밖에서 소비 되므로 VAT 0% 세율이 부과된다.

본 OL의 재미있는 점은 조세당국이 수출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베트남에서 수행됨"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다는 것이다.

(GDT의 2020년 9월 9일 제 3705/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FCWT;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Incoterm 조건에 따라 베트남회사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는 베트남에 FCWT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 VAT:

- 재화의 가치와 첨부된 서비스의 가치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재화의 가치는 수입단계에서만 VAT를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의 가치는 VAT 5%가 부과된다;
- 재화의 가치와 첨부된 서비스의 가치가 분리될 수 없는 경우 전체 계약 가치에 VAT 3%가 부과된다.

• CIT: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설치, 시운정, 유지보수 등 서비스의 수행 없이 DDU조건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으로 재화를 납품장소로 운송서비스만 수행하는 경우 재화의 가치와 서비스의 가치가 분리된 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계약 가치에 CIT 1%가 부과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9월 21일 제84844/CT-TTHT호 OL)

외국 은행의 입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FCWT;

베트남에 소재하는 외국 은행의 지점이 해외 시장에서 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제공하기 위해 한국 계약자 (외국인 계약자)와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베트남 FCWT가 부과될 대상이 아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9월 4일 제81005/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제111/2020/ND-CP호 시행령의 수행에 초과 납세액의 처리에 대한 지침;

1. 유럽 연합의 영토:

2020년 8월 1일부터 관세 신고를 등록된 수출품: 수출 신고서 등록일로 부터 01년 이내 신고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 재화가 유럽연합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에 따른 특별우대관세율에 대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및
- 추가 신고를 수행했음

관세당국은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제4조 3c항 및 2018년 4월 20일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64항 및 65항을 근거하여 초과 납세액을 처리한다.

수입품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 유럽 연합의 회원국;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또는 베트남의 비관세 지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소입된 재화임; 및
- 2020년 8월 1일부터 본 시행령의 발효일 이전까지 관세신고서가 등록된 재화임; 및
- EVFTA에 따른 특별우대관세율에 대한 조건을 충족함; 하지만
- 더 높은 수준으로 초과 납세되었음.

납세자가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제6조 3항 및 2018년 4월 20일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64항 및 65항에 따라 특별우대관세율 적용 및 초과 납세액의 처리를 위해 추가 신고를 수행한다.

2. 대브리튼왕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및 북아일랜드

초과 납세액의 처리는 2020년 8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된 수출입 신고서에만 적용된다.

(관세총국 (“GDC”) 의 2020년 9월 24일 제6283/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처리

물품이 수입된 후 B13 코드로 (수입품 재수출) 원래 상태로 재수출된 경우 관세 환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B13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품을 원래 상태로 재수출할 경우 수출 관세신고서상 해당 상품이 수입된 후 사용,가공,제조등 되지 않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수입세가 환급될 수 있다.

비고: 수출신고서상 재수출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의 번호를 명시되어야 한다.

(GDC의 2020년 10월 08일 제 6529/TCHQ-TXNK호 OL)

신규 규정

보세창고에 말기가 금지된 수입 품목

총리는 보세창고에 말기가 금지된 수입품목에 관한 2020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된 제27/2020/QD-TTg호 결정서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 555 또는 Esse 브랜드의 니코티아나 타바쿰 잎을 함유하고 베트남 원산지가 없는 담배: HS 코드 24.02.20
- 용량이 50ml를 초과하고 베트남 원산지가 없는 위스키: HS 코드 22.08.30.00.00

2020년 11월 15일 이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기간이 법적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보세창고에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 재고품이 실제로 출고되지 않은 경우 초기 수입문으로 재수출 되어야 한다.

(총리의 2020년 09월 21일 제27/2020/QD-TTg호 결정서)

관세 행정제재에 관한 신규 규정

2020년 10월 19일 관세 행정제재에 관한 제128/2020/ND-CP호 시행령 (제128호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제128호 시행령은 행정위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며 현행규정보다 상당히 높은 제재 수위를 적용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128호 시행령에 대해 딜로이트의 2020년 10월 26일 세무뉴스를 참고하십시오

(정부의 2020년 10월19일 제128/2020/ND-CP호 시행령)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